

대구지방법원 2004. 4. 27. 선고 2004노398 판결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업무방해】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04. 7. 6. 선고 2004노398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전문

피고인 1. 다. 박○○ (59XXXX-1XXXXXX), 유통업

2. 가.나.다. 윤○○ (65XXXX-1XXXXXX), 회사원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은정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1. 15. 선고 2003고단549, 578(병합), 75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04. 4. 27

주문

1. 피고인 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윤○○를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윤○○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이를 1일로 한다.

피고인 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박○○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피고인 윤○○) 임차인들로부터 입점자 각서를 받아 놓으라는 상피고인 박○○의 지시에 따라 임차인들이 입점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자필로 입점자 각서를 작성하여 임차인들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후 그들이 건네준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사업자등록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맡겨 두었던 막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입점자들 몰래 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피고인들) 주식회사 ○○과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위 회사는 임차인이 각종 공과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사전최고 없이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미납공과금을 납부하여 임대차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단전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일 뿐, 단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박○○: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윤○○: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윤○○에 대한 원심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곽○○, 신○○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박○○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동인들은 각 자신들 명의의 입점자 각서에 직접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승낙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서류를 제시하고 동인들의 도장을 건네받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윤○○에 대한 원심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02. 8. 17. ○○시 ○○동123-7 갤러리 플렉스 내의 피해자 곽○○의 점포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동인 명의의 입점자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우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2) 같은 해 9. 13. 위 ○○ 내의 피해자 신○○, 박○○의 점포에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동인 명의의 입점자각서의 사본을 우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박○○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곽○○, 신○○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그리고 고소장의 기재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원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써 행사할 때 그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그 정을 알고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서의 행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인바, 그에 따라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이를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동 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살펴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입점자각서를 각 위조한 후 마치 이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명도최고서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문서의 작성명의인들인 피해자들 본인에게 각 우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동 피해자들은 위 각 입점자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인들에게 위 각 입점자각서의 사본을 행사하는 것은 위조된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및 당시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임대인인 주식회사 ○○이 임차인인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특히 꺾○○와 사이에 체결한 것으로서 당심 제2회 공판조서에 편철된 것) 제16조 제1항 나호에 '임차인이 본 계약 제3조, 제4조 소정의 임대료, 관리비, 홍보비 기타 본 계약상 부담하는 제반 금전채무 등의 이행을 각 그 납부 마감 일로부터 2개월 이상 연체할 때에는 임대인이 사전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다만 원활한 상가 운영상 임대인은 해지하기 전 경고 및 영업정지 기타 일시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행할 당시 피해자들이 임대인인 주식회사 ○○에게 2개월 이상 차임과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상의 영업권 제한조치 권한은 사회상규나 계약의 합목적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들이 차임 등을 연체한 경우에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차임 등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는 외에 임의로 단전 등의 조치를 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를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것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도 임대차계약 당시 장차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용인할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박○○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임차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지속되자 임의로 단전조치를 취하거나 미리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만을 반환받을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계약 당시에 시설비,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까지 반환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한 후 선별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윤○○

피고인 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범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박○○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제4항을 제3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김○○, 이○○, 곽○○, 신○○, 박○○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신○○, 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 곽○○, 신○○,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점자각서 사본, 명도최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31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윤○○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본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재영 판사 남동희